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7. 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1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10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0.26.)

상정. 심사. 보류

제2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0.2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】

가. 제안이유

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 인력 확충으로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원로의 지식과 경험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급변하 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구성 변경 및 위원수 확대 (안 제3조제1항~제2항, 제4항~제5항)

-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한 조항 추가(안 제10조제2항~제3항)
- O 마포구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내용 정비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 미래성장자문단의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 인력 확충 으로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원로의 지식과 경험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O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3조제1항~제2항, 제4항~제5항)에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구성 변경 및 위원수 확대하는 내용임.
- (안 제10조제2항~제3항)에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한 조항 추가 하는 내용임.
- (안 제11조)에 마포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내용 정비 하는 것임.

O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자문단을 정책 분야별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 개정하는 것으로,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포구의 정책결정 및 구정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건의·자문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변경및 인원 확충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현재 자문단의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자문단의 자문으로 변화가일어난 정책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, 자문단 위원 수의 확대는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한 자문단 구성이 요구됨.
- 또한, 경비성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별 구성인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여성의 사회적 진출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여성 자문단 인원 비율 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론요지: 없 음
- 6. 심사결과: 수정가결 ※ 수정안 첨부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8. 기 타: 없 음